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가 제작자 폐업, 정보제공 항목 불분명 등으로 인해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진단정보 제공 항목 구체화 및 제공 시기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하고,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휠 너트·볼트 이탈 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처리하여 정비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임.

한편,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구동방식별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과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6제2항 본문 중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를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를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 중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를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포함)”로 한다.

제150조제1항제8호의4 중 “법 제52조”를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업무 및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5의3 제1호가목1) 중 “통신규약”을 “통신규약·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로 하고, 같은 목 2)와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36)까지 외의 부분 중 “것을”을 “것(통합 제어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제어장치도 포함한다)을”로 하며, 같은 목에 35) 및 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암호화 소스(seed key)”를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로 하고, 같은 호라목 중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

고, 같은 표 제5호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2) 전지(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 온도 등 배터리 상태(센서)를 읽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규약(「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한정한다)

3) 검사 중 발생한 고장진단 삭제를 위한 자료

4)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에 따른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

35)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36) 경고음발생장치

별표 5의9 제1호가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료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별표 5의6, 별표 5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1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가. 내연기관 자동차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1) 동일성 확인	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의 상태가 양호할 것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상태 확인

2) 제원측정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길이 · 너비 · 높이 · 최저지상고, 뒤 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 여부 확인
3) 원동기	가)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진동 · 소음 확인
	나)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원동기 설치상태 확인
	다) 점화 · 충전 · 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점화 · 충전 · 시동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라) 윤활유 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윤활유 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마)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 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냉각계통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 확인
4) 동력 전달 장치	가) 손상 · 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확인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 변형 여부 확인
	나) 클러치 페달 유격이 적정하고,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현재 위치와 표시가 일치할 것	클러치 페달 유격 적정 여부,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위치표시 확인
5) 주행장치	가)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 · 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 · 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수나사 · 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인
	나)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 및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다) 흡반이 및 휠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흡반이 및 휠하우스 설치상태 확인
	라)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 조절장치의 설치위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 조절장치의 설치위치 및 상태 확인

6) 조종장치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시동·가속·클러치·변속·제동·등화·경음·창닫이기·세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7) 조향장치	가) 조향바퀴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판 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미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
	나) 조향 계통의 변형·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	기어박스·로드암·파워실린더·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확인
	다)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이 적정할 것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 확인
8) 제동장치	가) 제동력 (1)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50퍼센트(뒤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 차축의 좌·우 차바퀴 제동력의 차이는 해당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 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나)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오일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유량이 적정할 것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및 브레이크 오일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다)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라) 피견인자동차 중 안전기준에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공기라인 분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동장치 분리 시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야 하며, 주차브레이크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설치상태가 정상일 것	리 시 자동 정지 여부, 주차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 및 설치상태 등 확인
9) 완충장치	가) 균열·절손 및 오일 등의 누출이 없을 것	스프링·쇼크업소버의 손상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확인
	나) 부식·절손 등으로 판스프링의 변형이 없을 것	판스프링의 설치상태 확인
10) 연료장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의 손상·변형·부식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변형·부식 및 조속기 봉인상태 확인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 여부 확인 및 가스저장용기의 부식상태 확인 다) 연료의 누출 여부 확인(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연료누출 여부 포함)
11) 전기 및 전자장치	가) 전기장치 (1)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가) 축전지와 연결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흔들림 여부 확인 나) 전기배선의 손상·절연 여부 및 설치상태를 감각기관으로 확인
	나)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동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각기관으로 설치 여부 확인

	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확인
12)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부식·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변형이 없을 것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
	다)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최대적재량(탱크로리는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량 및 적재품명) 표시 확인
	라)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차체의 외관 확인
	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차체의 색상 및 보호표지 설치 상태 확인
13)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가)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 여부 확인
	나) 차량 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보조연결장치 설치상태 확인
14) 승차장치	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좌석·승강구·조명·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	좌석·승강구·조명·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와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확인
	나) 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 여부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승강구 설치상태 및 규격 확인
15) 물품적재장치	가)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나)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	가)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 확인(변경된 경우 계측기 등으로 측정)

	합의 개조가 없을 것 다)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라)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나)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의 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
16) 창유리	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섀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17)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 지장치	가)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운행차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기로 측정
	나)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변형·부식이 없을 것		배기관·촉매장치·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 여부 확인
	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훼손 또는 조작 여부 확인
18) 등화장치	가) 변환빔의 광도는 3천칸델라 이상일 것		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광도와 광도점을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광도점의 광도 확인
	나) 변환빔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		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컷오프선 및 꼭지점의 위치를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컷오프선의 적정 여부 확인
	설치높이 ≤ 1.0m	설치 높이 > 1.0m	
	-0.5% ~ -2.5%	-1.0% ~ -3.0%	
	다) 컷오프선의 꺾임점(각)이 있는 경우 꺾임점의 연장선은		변환빔의 컷오프선, 꺾임점(각), 설치상태 및 손상여부 등 안전기

	우측 상향일 것	준 적합 여부를 확인
	라)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 기준에 적합할 것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과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 확인
	마)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 확인
	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된 표시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표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사)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안전 기준에서 금지한 등화가 없을 것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여부 확인
19) 경음기 및 경보장치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싸이렌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	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확인 경적음 및 싸이렌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경보장치는 신규검사로 한정함)
20) 시야확보 장치	가) 후사경은 좌·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후사경 설치상태 확인
	나) 창담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인 것	창담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광각 실외후사경이 설치되어 있을 것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여부 확인
21) 계기장치	가)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계기장치의 설치 여부 확인
	나)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 시험기로 측정
	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22) 소화기 및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소화기의 설치 여부 확인

방화장치	있을 것	
23) 내압용기	용기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의 변형이 없고 사용연한 이내 일 것	용기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합격품인지 여부, 설치상태 및 변형·손상 여부 및 사용연한 확인
24) 기타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할 것(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자료를 확인

비고

1. 내연기관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외의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87조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검사항목, 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사업용자동차는 다음의 검사항목, 기준 및 검사방법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1) 주행장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재생타이어 장착 여부 확인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는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의 장착 여부 확인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의 장착 여부 확인

	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를 사용할 것	
2) 승차장치	가) 입석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고 손상이 없을 것	입석손잡이 설치상태 확인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제외)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제외)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3) 등화장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안내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안내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1) 동일성 확인	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	자동차의 차대번호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상태 확인

	호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의 상태가 양호할 것	
2) 제원측정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 뒤 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 여부 확인
3) 동력 전달 장치	가) 손상·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변속장치의 작동 및 누유 여부 확인과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변형 여부 확인
	나) 변속장치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현재 위치와 표시가 일치할 것	변속장치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위치표시 확인
4) 주행장치	가)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수나사·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인
	나)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 및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다) 흡반이 및 휠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흡반이 및 휠하우스 설치상태 확인
	라)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 조절장치의 설치위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 조절장치의 설치위치 및 상태 확인
5) 조종장치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시동·가속·변속·제동·등화·경음·창닫이기·세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6) 조향장치	가) 조향바퀴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판 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미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
	나) 조향 계통의 변형·누유 및 누유가 없을 것	기어박스·로드암·파워실린더·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확인

	다)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이 적정할 것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 확인
7) 제동장치	가) 제동력 (1)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50퍼센트(뒤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 차축의 좌·우 차바퀴 제동력의 차이는 해당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 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나)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오일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유량이 적정할 것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및 브레이크 오일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다)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라) 피견인자동차 중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동장치 분리 시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야 하며, 주차브레이크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설치상태가 정상일 것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공기라인 분리 시 자동 정지 여부, 주차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 및 설치상태 등 확인
8) 완충장치	가) 균열·절손 및 오일 등의 누출이 없을 것	스프링·쇼크업소버의 손상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확인
	나) 부식·절손 등으로 판스프링의 변형이 없을 것	판스프링의 설치상태 확인
9) 전기 및 전자장치	가) 전기장치 (1)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가) 축전지와 연결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흔들림 여부 확인

(2)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나) 전기배선의 손상·절연 여부 및 설치상태를 감각기관으로 확인
나) 고전원전기장치 (1) 고전원전기장치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가) 고전원전기장치(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충전접속구 등)의 설치상태, 전기배선 접속단자의 접속·절연상태 등을 감각기관으로 확인
(2) 고전원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나)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 사이의 고전원 전기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 또는 활선 도체부의 노출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3) 구동축전지는 냉각 계통·외부케이스에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으며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다) 냉각 계통·외부케이스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차실 사이가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 여부 확인
(4) 전력변환장치는 냉각계통 및 손상이 없고, 냉각수 누출이 없을 것	라) 냉각 계통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 누출여부 확인
(5) 구동전동기 (가) 구동전동기는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구동전동기 각부의 작동상태를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확인
(나)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심한 진동 또는 이상음이 발생하는지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확인
(다) 냉각계통의 손상 및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냉각계통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 확인
(6) 차실 내부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	마)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고전원 전기배선 보호기구의 고정, 깨짐, 손상 여부 등을 확

	스틱 재질의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인
	(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방·분해 및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	바)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 체결상태 및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분해 및 제거 가능 여부 확인. 다만, 차실, 벽, 보호판 등으로 격리된 경우 생략 가능
	(8)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것	사)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구에 부착 또는 표시된 경고표시의 모양 및 식별가능성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9)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피복은 주황색일 것	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구동축전지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와 구동전동기, 전력변환장치와 충전접속구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의 색상이 주황색인지 여부 확인
	(10) 전기자동차 충전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차체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MΩ 이상일 것	자) 절연저항시험기를 이용하여 충전접속구 각각의 활선도체부(+극 및 -극)와 차체 사이에 충전전압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여 절연저항 측정
	(11)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가 양호할 것	차)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저항 관련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12)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	카) 전자장치진단기로 고전원전기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에 이상이 없을 것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기 장치의 고장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13)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전기 자동차에 한함) (가) 수소저장 탱크의 손상·변형·부식 및 가스누출이 없을 것	가) 수소저장 탱크의 손상·변형·부식 여부를 감각기관으로 확인하고, 가스누출감지기로 수소저장용기의 연료누출 여부 확인
	(나) 연료전지의 손상·변형·부식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나) 연료전지의 손상·변형·부식 여부를 감각기관으로 확인하고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전지의 연료누출 여부 확인
	(다) 냉각 계통에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다) 냉각 계통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 확인
	다) 전자장치 (1)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구동력제어장치, 전자식차동제한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가)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다만,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각기관으로 설치 여부 확인
	(2) 저소음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나) 전자장치진단기로 경고음발생장치의 고장진단코드를 확인. 다만, 전자장치진단기로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행 상태에서 경고음 발생 여부 확인
	(3) 후방보행자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 확인
10)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부식·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이 없을 것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변형이 없을 것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
	다)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최대적재량(탱크로리는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량 및 적제품명) 표시 확인
	라)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차체의 외관 확인
	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차체의 색상 및 보호표지 설치상태 확인
11)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가)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 여부 확인
	나) 차량 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보조연결장치 설치상태 확인
12) 승차장치	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좌석·승강구·조명·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	좌석·승강구·조명·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와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확인
	나) 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 여부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승강구 설치상태 및 규격 확인
13) 물품적재장치	가)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가)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 확인(변경된 경우 측정기 등으로 측정)
	나)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나)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의 덮개 설치 여부를 확인
	다)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라) 청소용 자동차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14) 창유리	가)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	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섀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15) 등화장치	가) 변환빔의 광도는 3천칸델라 이상일 것	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광도와 광도점을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광도점의 광도 확인	
	나) 변환빔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	좌·우측 전조등(변환빔)의 컷오프선 및 꼭지점의 위치를 전조등시험기로 측정하여 컷오프선의 적정 여부 확인	
	설치높이 ≤ 1.0m	설치 높이 > 1.0m	
	-0.5% ~ -2.5%	-1.0% ~ -3.0%	
	다) 컷오프선의 꺾임점(각)이 있는 경우 꺾임점의 연장선은 우측 상향일 것	변환빔의 컷오프선, 꺾임점(각), 설치상태 및 손상여부 등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라)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과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 확인	
	마)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 확인	
	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된 표시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표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사)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안전 기준에서 금지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여부 확인	

	한 등화가 없을 것	
16) 경음기 및 경보장치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싸이렌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	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확인 경적음 및 싸이렌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경보장치는 신규검사로 한정함)
17) 시야확보 장치	가) 후사경은 좌·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후사경 설치상태 확인
	나) 창담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인 것	창담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광각 실외후사경이 설치되어 있을 것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여부 확인
18) 계기장치	가)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계기장치의 설치 여부 확인
	나)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 시험기로 측정
	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및 주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소화기의 설치 여부 확인
20) 내압용기	용기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의 변형이 없고 사용연한 이내일 것	용기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합격품인지 여부, 설치상태 및 변형·손상 여부 및 사용연한 확인
21) 기타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할 것(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

	월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인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자료를 확인
--	-----------------	--

비고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검사항목, 기준 및 검사방법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사항목, 기준 및 검사방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환경 관련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검사항목, 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4. 사업용자동차는 다음의 검사항목, 기준 및 검사방법을 추가로 실시한다.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1) 주행장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재생타이어 장착 여부 확인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는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를 사용할 것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의 장착 여부 확인
2) 승차장치	가) 입석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고 손상이 없을 것	입석손잡이 설치상태 확인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같은 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같은 표 제2호아목에 따른 시외일

	제2호아목에 따른 시외일반 버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반버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제외)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 시설을 설치되어 있을 것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제외)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3) 등화장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안내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안내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

별지 제4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7호의3서식 중 “시행규칙 제154조의2제3항”을 “시행규칙 제15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6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9조의6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자동차 판매를 위해 최초로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준에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 절차는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기검사기준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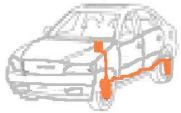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검사일자: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명		차 명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최초등록일	
다음 종합검사일 ¹⁾		재검사 기간 ²⁾		주행거리	km

1) 다음 검사는 위의 다음 종합검사일 기준 전 90일 이내,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2) 재검사 대상 자동차는 위의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기간 경과 시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와 검사 재신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항목			안전진단기준(검사기준)			진단결과	진단의견	검사원
조향계통		앞바퀴 정렬	옆방향 미끄러짐 정도 (1m 주행에 5mm 이내)					
		조향계통 설치상태 등	변형·느슨함·누유여부 파워스티어링 오일량					
주행계통		차축·타이어·휠	외관 손상·변형·돌출여부 타이어 상태					
		변속기 추진축 등	변속기 오일 오염도(진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추진축·등속조인트(손상·변형) 클러치 유격상태					
		뒷바퀴 정렬(옆 방향 미끄러짐)						
제동계통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력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50% 이상	% (측정값: kg)		
				후	앞축무게(kg)의 50% 이상			
			뒷축	전	뒷축무게(kg)의 20% 이상	% (측정값: kg)		
				중	뒷축무게(kg)의 20% 이상			
				후	뒷축무게(kg)의 20% 이상			
			전체브레이크		전체무게(kg)의 50% 이상	% (측정값: kg)		
		주차브레이크		전체무게(kg)의 20% 이상	% (측정값: kg)			
		좌·우 차이 (편차)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8% 이하	% (: kg)		
				후	앞축무게(kg)의 8% 이하			% (: kg)
			뒷축	전	뒷축무게(kg)의 8% 이하	% (: kg)		
				중	뒷축무게(kg)의 8% 이하			% (: kg)
				후	뒷축무게(kg)의 8% 이하			% (: kg)
		제동계통 설치상태 등		견고한 설치·손상·오일누출 배력(booster) 장치의 작동상태				
				디스크·패드상태				
등화장치		전조등	광도	좌/우	3,000cd 이상	좌측밝기: cd 우측밝기: cd		
			진폭	좌	설치높이 ≤ 1.0m	-0.5% ~ -2.5%	높이: m 진폭: %	
				우	설치높이 > 1.0m	-1.0% ~ -3.0%	높이: m 진폭: %	
		기타등화		등화장치 점등 및 설치상태 등				
		배출가스		휘발유 L P G	검사방법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경유	검사방법							
	매연							
	질소산화물(NOx)							
	최대출력							
엔진회전수								
배기, 소음 발산방지장치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 변형 등이 없을 것				
계기 속도계	40km/h일 때(32 ~ 44.4km/h)							
계기 계통		계기장치	운행기록계·최고속제한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뒤쪽)

진단항목			고장코드	
자기진단 센서 점검				
고전원 전기 장치	진단항목		진단결과	진단의견
	배터리 상태	안전점검	고전압 부품 절연	
			배터리 셀 간 전압편차	
			배터리 모듈 온도	
	성능점검	충 동작시간		
		누적 충 · 방전량		
		배터리 충전량(SOC)		
		배터리 열화상태(SOH)		
		급속 충전 횟수		
충전접속구 절연저항		MSΩ		
검사항목		진단결과	진단의견	
관능(육안) 검사	엔진오일 오염도 / 벨트상태 원동기 이상음 / 시동장치 / 방열기			
	동일성 / 차대 및 차체 / 물품적재장치			
	(승차 / 조종 / 완충 / 방화)장치			
	경음기 / (연결 및 견인 / 전기) 장치			
	연료장치 / 내압용기 / 시야확보 / 창유리			
	기타장치			
	서비스 제공			
종합 진단결과		<종합의견> <부적합 내용> <시정 권고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소 검사책임자

인

※ 본 진단서는 고객님의 차량 관리를 위한 진단결과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① (생략) ② 자동차제작자들은 자기인증을 한 <u>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3 각 호의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u> 다만, 자동차제작자들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 계획을 해당 <u>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③ (생략)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생략) ② (생략) 1. ~ 1의2. (생략) 2. 주행장치 <u>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u>	제49조의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① (<u>현행과 같음</u>) ② ----- ---- <u>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u> ----- ----- . ----- ----- ----- ----- ----- <u>자동차의 판매개시 10 일 전까지</u> ----- ----- ----- ----- ----- . ③ (<u>현행과 같음</u>)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u>현행과 같음</u>) ② (<u>현행과 같음</u>) 1. ~ 1의2. (<u>현행과 같음</u>) 2. 주행장치 <u>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u>

나. ~ 라. (생략) 3. ~ 23. (생략) ③ ~ ⑥ (생략)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의3. (생략) 8의4. <u>법 제52조</u>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 8의5. ~ 9. (생략) ② · ③ (생략)	<u>(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포함)</u>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 ----- ----- --. 1. ~ 8의3. (현행과 같음) 8의4. <u>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및 법 제52조</u>----- ----- 8의5.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